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1452
-01

<http://www.mifaff.go.kr>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2. 8



목 차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
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	26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33
◆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43
◆ 찾아보기	4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12. 5. 23 시행(2011. 11. 22 제정공포 법률 제11096호)

2. 동 법 시행령

- 2012. 5. 22 제정공포(대통령령 제23794호)

3. 동 법 시행규칙

- 2012. 6. 22 제정공포(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4호)

법 률(제11096호, '11.11.22 제정)	시행령(제23794호, '12.5.22 제정)	시행규칙(제284호, '12.6.22 제정)
제1조(목적) 1	제1조(목적)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조(도시농업의 범위) 1	
	제3조(도시지역의 범위) 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2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2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2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4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제7조(도시농업위원회) 5	제6조(도시농업위원회의 운영 등) 5	
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7		제2조(도시농업업의 유형별 세부 분류) 7
제9조(실태조사) 8	제7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8	
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9		제3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9
		제4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10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11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11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12
제12조(연구 및 기술개발) 13		
제13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14		제7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14
제14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15		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 15
제15조(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지역 토지의		
매수·교환) 1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법 률(제11096호, '11.11.22 제정)	시행령(제23794호, '12.5.22 제정)	시행규칙(제284호, '12.6.22 제정)
<p>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p>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p>	<p>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도시농업의 범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p> <p>제3조(도시지역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거지</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법 률(제11096호, '11.11.22 제정)	시행령(제23794호, '12.5.22 제정)	시행규칙(제284호, '12.6.22 제정)
<p>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 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p> <p>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농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p> <p>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 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6. 도시농업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p>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을 말한다.</p> <p>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p>	

법 률(제11096호, '11.11.22 제정)	시행령(제23794호, '12.5.22 제정)	시행규칙(제284호, '12.6.22 제정)
<p>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7조에 따른 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p>	<p>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농업의 실태조사 2. 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p>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의 사항을 말한다.</p>	

법 률(제11096호, '11.11.22 제정)	시행령(제23794호, '12.5.22 제정)	시행규칙(제284호, '12.6.22 제정)
<p>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p> <p>③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도시농업위원회) 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3. 제12조에 따른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4. 제20조에 따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농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p>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p>	

법 률(제11096호, '11.11.22 제정)	시행령(제23794호, '12.5.22 제정)	시행규칙(제284호, '12.6.22 제정)
<p>2. 도시농업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p> <p>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도시농업의 유형 등) ① 도시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유형별 세부 분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내부·외부, 난간,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주택·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p> <p>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주변의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토지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p> <p>3. 도심형 도시농업: 도시에 있는 고층 건물의 내부·외부, 옥상 등을 활용하거나 도시에 있는 고층 건물에 인접한 토지를 활용한 도시농업</p> <p>4.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제14조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제17조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p> <p>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p>	<p>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시·도지사는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제6조(도시농업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법 률(제11096호, '11.11.22 제정)	시행령(제23794호, '12.5.22 제정)	시행규칙(제284호, '12.6.22 제정)
<p>활용한 도시농업</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의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9조(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0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법 률(제11096호, '11.11.22 제정)	시행령(제23794호, '12.5.22 제정)	시행규칙(제284호, '12.6.22 제정)
<p>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p>	<p>제7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농업의 유형별 현황 2.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현황 	<p>제2조(도시농업의 유형별 세부 분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의 유형을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이하 “텃밭”이라 한다)의 위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주택·공동주택 내부텃밭, 주택·공동주택외부텃밭, 주택·공동주택 인접텃밭 2.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농장형 주말텃밭, 공공목적형 주말텃밭 3. 도심형 도시농업: 고층건물 내부텃밭, 고층건물 외부텃밭, 고층건물 인접텃밭 4.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공영도시농업농장 텃밭, 민영도시농업농장 텃밭, 도시공원 텃밭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유치원 또는 유아원 텃밭, 초등학교 텃밭, 중학교 텃밭, 고등학교 텃밭, 기타 학교교육형 텃밭

법 률(제11096호, '11.11.22 제정)	시행령(제23794호, '12.5.22 제정)	시행규칙(제284호, '12.6.22 제정)
<p>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p>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농림수산물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 현황 4.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현황 5. 그 밖에 도시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p>②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③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한다.</p>	<p>제3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① 법 제</p>

법 률(제11096호, '11.11.22 제정)	시행령(제23794호, '12.5.22 제정)	시행규칙(제284호, '12.6.22 제정)
<p>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p>제12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p>		<p>10조제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농업 지도·교수 및 운영 요원의 보유현황 2. 도시농업 교육 및 실습 시설의 보유현황 3. 도시농업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4. 도시농업 정보제공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계획 5. 수강료 책정계획 <p>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2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p>

법 률(제11096호, '11.11.22 제정)	시행령(제23794호, '12.5.22 제정)	시행규칙(제284호, '12.6.22 제정)
<p>1.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에 관한 수요 조사</p> <p>2.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p> <p>3. 도시농업 관련 연구성과 및 개발된 기술의 보급·교류 및 협력</p> <p>4.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p> <p>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3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도시농업인들은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도시농업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그 신청내용이 내용이 별표 1의 도시농업 지원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4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법 제10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p>

법 률(제11096호, '11.11.22 제정)	시행령(제23794호, '12.5.22 제정)	시행규칙(제284호, '12.6.22 제정)
<p>제14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도시농업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도시지역에 위치한 공유지 중에서 도시농업에 적합한 토지를 선정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신청서에 업</p>		<p>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3호 서식의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도·교수 및 행정요원의 보유현황 2.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운영계획 4. 수강료 책정계획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2항에 따른 전문</p>

법 률(제11096호, '11.11.22 제정)	시행령(제23794호, '12.5.22 제정)	시행규칙(제284호, '12.6.22 제정)
<p>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승인권자(이하 “개설승인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면 미리 개설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p> <p>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영도시농업농장을 폐쇄하려면 폐쇄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개설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지역 토지의 매수·교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영도시농업농장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계약에 따라 인접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공유지와 교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매수나 교환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 매수 또는 교환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p>		<p>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내용이 별표 2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p>

법 률(제11096호, '11.11.22 제정)	시행령(제23794호, '12.5.22 제정)	시행규칙(제284호, '12.6.22 제정)
<p>제16조(공영도시농업농장 토지의 임대)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도시농업인에게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받은 도시농업인은 그 토지를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임대의 요건과 기간 및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과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영도시농업농장은 위치와 면적,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 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법 률(제11096호, '11.11.22 제정)	시행령(제23794호, '12.5.22 제정)	시행규칙(제284호, '12.6.22 제정)
<p>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교류 및 협력 시책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p>		<p>제7조(도시농업공동체의 등록)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공동체 (이하 "도시농업공동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지역의 가구가 10가구 이상 참여할 것 2.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도시농업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4.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의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p>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 5호서식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에 제 8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2항에 따른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p>

법 률(제11096호, '11.11.22 제정)	시행령(제23794호, '12.5.22 제정)	시행규칙(제284호, '12.6.22 제정)
<p>원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실습·체험 활동이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에 따른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제19조(박람회 등의 개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 박람회 또는 도시농업 관련 생활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p> <p>제20조(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p> <p>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영도시농업농장, 민영도시농업농장 등의 임대 정보 및 임차 신청 2.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농자재 등의 제공·교환·폐기·회수 등에 관한 정보 3.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및 신청 		<p>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할 수 있다.</p>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를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p> <p>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승인) ①</p> <p>법 14조제1항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이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라 한다)의 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텃밭은 1헥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 灌水用 물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는 것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운

법 률(제11096호, '11.11.22 제정)	시행령(제23794호, '12.5.22 제정)	시행규칙(제284호, '12.6.22 제정)
<p>4. 도시농업 관련 기술에 관한 정보</p> <p>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 기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적인 도시농업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이하 “관리·처리 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도시농업인은 관리·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인이 관리·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의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2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p>		<p>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p> <p>② 공영도시농업농장을 개설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제 2항 각 호의 개설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승인할 수 있다.</p> <p>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농업농장 내 부속시설의 설치 현황, 텃밭구획, 임대절차 및 임대대상자 선정방법을 말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p>

법 률(제11096호, '11.11.22 제정)	시행령(제23794호, '12.5.22 제정)	시행규칙(제284호, '12.6.22 제정)
<p>청문을 하여야 한다.</p> <p>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물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③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물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농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한 사람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물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제8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료 징수)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p>	<p>제9조(공영도시농업농장의 임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를 임대하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영도시농업</p>

법 률(제11096호, '11.11.22 제정)	시행령(제23794호, '12.5.22 제정)	시행규칙(제284호, '12.6.22 제정)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농장의 토지에 관한 임대 신청 및 임대 요건, 임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요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가 있을 것 2. 임대요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임대기간: 1년으로 하되, 재임대 가능 <p>③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것 외에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토지의 임대 신청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p> <p>제10조(민영도시농업농장의 등록기준 등)</p> <p>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이하 “민영도시농업농장”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영도시농업농장의 텃밭은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 灌水用 물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운

법 률(제11096호, '11.11.22 제정)	시행령(제23794호, '12.5.22 제정)	시행규칙(제284호, '12.6.22 제정)
		<p>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p> <p>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 농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 7호서식의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2항에 따른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제 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등록할 수 있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 3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을 등록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것 외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p>

법 른(제 11096호, '11.11.22 제 정)	시 행 령(제 23794호, '12.5.22 제 정)	시 행 규 칙(제 284호, '12.6.22 제 정)

법 른(제 11096호, '11.11.22 제 정)	시 행 령(제 23794호, '12.5.22 제 정)	시 행 규 칙(제 284호, '12.6.22 제 정)

법 른(제 11096호, '11.11.22 제 정)	시 행 령(제 23794호, '12.5.22 제 정)	시 행 규 칙(제 284호, '12.6.22 제 정)

법 률(제11096호, '11.11.22 제정)	시행령(제23794호, '12.5.22 제정)	시행규칙(제284호, '12.6.22 제정)
	<p>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법 률(제11096호, '11.11.22 제정)	시행령(제23794호, '12.5.22 제정)	시행규칙(제284호, '12.6.22 제정)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수립·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p>

법 률(제11096호, '11.11.22 제정)	시행령(제23794호, '12.5.22 제정)	시행규칙(제284호, '12.6.22 제정)
		<p>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도시농업지원센터 등의 지도 및 교수 요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정받는 도시농업지원센터 및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이하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하지 아니한 자를 지도 및 교수 요원으로 둘 수 있다 . 이 경우 해당 지도 및 교수 요원은 그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p>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 2조의 2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영도시농업농장을 도시농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1호	10만원	40만원	100만원
나.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제2호	5만원	10만원	20만원

(시행규칙) (별표 1)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제3조제3항 관련)

1. 도시농업 지도 및 교수요원과 운영요원

구 분	기준인원	자 격 요 건	비 고
지도 및 교수요원	3명 이상 (상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2에 따른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이하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수료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원예기사, 시설원예기술사, 원예기능사,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기능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종자기사, 종자기능사, 종자기술사, 종자산업기사, 화훼장식기사, 화훼장식기능사, 조경기능사,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조경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 도시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도시농업 관련 활동(교육, 연구, 보급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운영요원	3명 이상	-	

2.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시설

가. 강의실: 50제곱미터 이상

나. 도시농업 실습 및 체험장: 1,000제곱미터 이상

다.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보관시설: 50제곱미터 이상

라. 도시농업정보 지원실: 30제곱미터 이상

마. 그 밖에 교육 및 실습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화장실, 급수시설, 방음시설, 조명시설, 소방시설, 보건시설 등

3. 도시농업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가.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도시농업을 보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인 농사요령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
- 나. 도시농업인 농사요령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은 총 40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시간에는 20시간 이상의 실습시간이 포함될 것
- 다. 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과정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시간)

구 분	교 육 내 용	교육시간(40)		비 고
		이론(20)	실습(20)	
도시농업 이해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	2	-	
도시농업과 농사기술	작물 선택, 종자 및 종묘(種苗) 선택, 파종과 육묘(育苗) 및 번식, 양분·수분 관리, 병해충 관리, 잡초 관리, 정지(整枝) 및 결실 관리,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등	15	15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농자재 관리	텃밭 조성, 퇴비 및 비료 만들기, 친환경 병해충 방제약 만들기, 농기구 사용 및 관리, 농자재 이용 및 관리기준 등	3	5	

4. 도시농업 정보 제공 프로그램 보유

- 가. 텃밭 소개, 참여방법 안내, 신청·계약 등을 인터넷으로 지원할 것
- 나. 도시농업 농자재 보급 및 사용한 농자재 회수 코너를 마련할 것
- 다. 작물별 농사요령 안내, 텃밭에 적합한 작물소개, 텃밭조성 상담 및 컨설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5. 수강료 책정 등

- 가. 수강료는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할 것
- 나.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명, 수강료 및 납부방법 등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 다. 도시농업지원센터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강생에게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어떠한 금전적 부담도 부과하지 않을 것

(별표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1. 지도 및 교수요원과 행정요원

구 분	기준인원	자 격 요 건	비 고
지도 및 교수요원	2명 이상 (상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원예기사, 시설원예기술사, 원예기능사, 유기농업기사, 유기농업기능사, 유기농업산업기사, 종자기사, 종자기능사, 종자기술사, 종자산업기사, 화훼장식기사, 화훼장식기능사, 조경기사, 조경기사, 조경기술사, 조경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 도시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도시농업 관련 활동(교육, 연구, 보급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 	
행정요원	1명 이상	-	

2. 교육시설과 교육장비

가. 강의실: 50제곱미터 이상

나. 실습 및 현장학습장: 100제곱미터 이상

다. 그 밖에 교육 및 실습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화장실, 급수시설, 방음시설, 조명시설, 소방시설, 보건시설 등

3. 교육과정 운영

가.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은 반드시 운영하여야 하며, 도시농업인 농사요령 교육과정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의 교육시간은 총 80시간 이상, 도시농업인 농사요령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은 총 40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시간에는 40시간 이상, 도시농업인 농사요령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에는 20시간 이상의 실습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과 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 과정의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교육내용

(단위: 시간)

구 분	교 육 내 용	교육시간(80)		비 고
		이론(40)	실습(40)	
도시농업 이해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	2	-	
도시농업 기반조성	텃밭 설계, 관배수(灌排水) 시설, 폐기물 관리, 농자재 이용 및 관리 등	10	20	
도시농업 기술	텃밭농사기술, 벽면 녹화(綠化) 기술, 원예를 통한 정서순화 등	10	20	
친환경 농사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	병해충 관리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 요령	2	-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업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농사요령 보급 등	10		
도시농업 관련 법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도시농업 관련 법의 이해	2	-	
도시농업 리더십	도시민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	2	-	
프로그램 평가	도시농업 사례 발표 및 평가 등	2	-	

2) 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과정 교육내용

(단위: 시간)

구 분	교 육 내 용	교육시간(40)		비 고
		이론 (20)	실습 (20)	
도시농업 이해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	2	-	
도시농업과 농사기술	작물 선택, 종자 및 종묘 선택, 파종과 육묘 및 번식, 양분·수분 관리, 병해충 관리, 잡초 관리, 정지 및 결실 관리,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등	15	15	
도시농업 기반 조성 및 농자재 관리	텃밭 조성, 퇴비 및 비료 만들기, 친환경 병해충 방제약 만들기, 농기구 사용 및 관리, 농자재 이용 및 관리 기준 등	3	5	

4. 수강료 책정 등

- 가.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교육비용(수강료)은 교육원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가격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 나. 교육에 드는 수강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과정명, 수강료 및 납부 방법 등을 교육생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다.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강생에게 책정된 교육비용 외에 어떠한 금전적 부담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 열람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 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농업 지도 · 교수 및 운영 요원의 보유현황 2. 도시농업 교육 및 실습 시설의 보유현황 3. 도시농업 보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4. 도시농업 정보제공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계획 5. 수강료 책정계획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농림수산물식품부, 시·도, 시·군·구(도시농업 육성·지원 담당부서)

제 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

1. 명 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4.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5.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열람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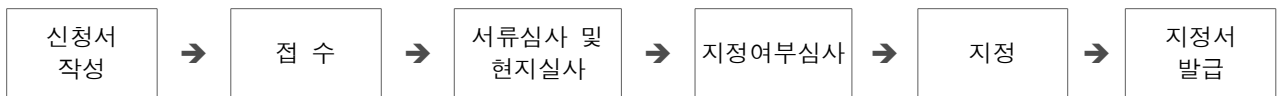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도·교수 및 행정 요원의 보유현황 2.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3.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운영계획 4. 수강료 책정계획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농림수산물식품부, 시·도, 시·군·구(도시농업 육성·지원 담당부서)

제 호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명 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4.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5.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열람일	처리기간	10일
------	-----	---------	------	-----

신청인	도시농업공동체명: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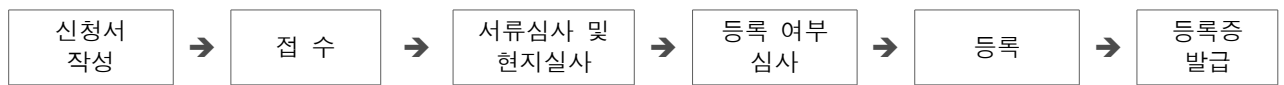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도시지역의 가구가 10가구 이상 참여할 것 2.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이 1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도시농업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4. 도시농업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의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도시농업 육성 지원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 호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증

1. 도시농업공동체명:
2.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3.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4.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열람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 농장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민영도시농업농장의 텃밭은 1천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쉼터, 화장실, 주차장, 관수용(灌水用) 물탱크, 실습교육장 및 퇴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갖출 것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도시농업 육성·지원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제 호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증

1. 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
4.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5.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에 따라 민영도시농업농장으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2012. 6. 7 제정공포(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 - 58호)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자재”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농업용 자재를 말한다.
2. “텃밭”이라 함은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옥상텃밭”이라 함은 인공지반텃밭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텃밭을 말한다.
4. “인공지반텃밭”이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지붕을 포함한다)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설치하여 그 위에 설치하는 텃밭을 말한다.

제2장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

제3조(안전한 농산물 생산) 도시농업인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적인 농사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오염의 방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

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및 사용한 영농자재 투기(投棄)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을 준수하고 사용한 영농자재 투기(投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텃밭의 안전성 점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도시농업인은 텃밭에서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텃밭농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텃밭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및 농약성분 등의 잔류 수준
2.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상태
3. 농약·비료 등 농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그 밖에 텃밭의 안전성 유지와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성 점검 조사시료 채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텃밭의 안전성 유지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텃밭의 안전성 점검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試料)를 채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텃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조(사용한 농자재의 회수 및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도시농업인은 사용된 농자재 용기, 오염된 흙, 부산물 등을 도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회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적인 농사기술의 교류 등) 도시농업관련 기관과 단체 및 도시농업인은 친환경적인 농사기술을 서로 교류하여 도시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기준 교육)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기준을 도시농업인과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텃밭의 조성 및 관리

제10조(텃밭조성 금지지역) ① 도시농업관련 기관과 단체 및 도시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텃밭을 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텃밭의 안전성 점검결과 중금속이 오염된 지역
2. 분진이나 매연이 발생하는 도로인접 지역
3. 오수와 폐수 및 악취가 유입되는 지역
4. 다른 법령에서 농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지역

제11조(텃밭이용자의 금지행위) 텃밭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
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텃밭의 관리에 지장을 미치는 행위

제12조(옥상텃밭의 조성) ① 도시농업인이 옥상텃밭(“인공지반텃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성시 농작물·토양 및 관/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방수(防水)·방근(防根)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옥상텃밭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소유자는 미리 건축전문가로부터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13조(옥상텃밭의 안전관리) 옥상텃밭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조물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옥상의 난간 등 적합한 안전구조물

2. 농작물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안전한 지지대 등
3. 안전구조물 등의 정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제14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6월 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찾아보기(가나다순)

주요 내용	페이지	주요 내용	페이지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	15	도심형 도시농업	7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기준	15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	18
공영도시농업농장 개설승인	15	민영도시농업농장 개설신청서	19, 40
공영도시농업농장 임대	17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기준	18,
공영도시농업농장 임대료	18	민영도시농업농장 등록증	19, 41
공원형 도시농업	7	박람회 개최	21
과태료	24	부칙	25
과태료 부과기준	24, 27	사용농자재회수	44
교류협력	20	시행계획	4
국가·지자체 책무	2	실태조사	8
권한의 위임	23	연구 및 기술 개발	13
근린생활권 도시농업	7	옥상텃밭	43
농어촌정비법	20	옥상텃밭 안전관리	45
농자재	43	옥상텃밭 조성	45
농자재관리기준	22, 43	유아교육법	20
농장형·공원형 도시농업	7	인공지반텃밭	43
도시농업	1	전문인력양성	11
도시농업공동체	14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11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14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기준	12, 30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신청서	14, 38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서	12, 37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증	15, 39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	11, 36
도시농업위원회	5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취소	12
도시농업유형	7	조사시료채취	44
도시농업인	2	종합계획	2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	21	주택활용형 도시농업	7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9	청문	23
도시농업지원센터 요원특례	25	친환경농업육성법	43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	9	텃밭	43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기준	10, 28	텃밭 이용자 금지행위	45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	10, 35	텃밭 안전성점검	44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	9, 34	텃밭 조성 금지지역	45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취소	10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7
도시지역	1	환경오염방지	43